

## 2017년 지방직 지방세법 해설

### 1. 정답 ④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①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 ②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 ③ 그 밖의 경우: 5년

### 2. 정답 ③

#### • 미납세반출사유

- (1)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① 과세면제 담배를 제조장에서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 ② 「관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물품인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 ③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담배를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 (2)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 (3) 그 밖에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

#### • 면제사유

- (1)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 ①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를 포함한다)
  - ②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안에서 다음의 사람에 대한 판매
    - 가. 주한외국군의 군인
    - 나.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 ③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 ④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 ⑤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 ⑥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 ⑦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반출승인을 받은 담배로서 북한지역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북한지역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 ⑧ ①부터 ⑦까지의 담배용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2)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 (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수입되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 3. 정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 ①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④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⑤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 ⑥ ①부터 ④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4. 정답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과소신고, 초과환급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5. 정답 ③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 ②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 ③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정답 ③

- ①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의 순서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 ②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 ④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7. 정답 ③

• 과세대상

- ① 발전용수: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 다만,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미만인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흐르는 물로서 해당 발전소의 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 중 3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에 드는 흐

르는 물은 제외한다.

② 지하수

가. 먹는 물: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

나. 목욕용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퍼 올린 온천수

다. 그 밖의 용수: 가목 및 나목 외의 퍼 올린 지하수. 다만, 다음의 지하수는 제외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외의 지하수

2) 「지하수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면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인 가정용 우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하수

③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 시행령」에 따른 광산 중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산에서 채광된 광물**은 제외한다.

④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항·출항하는 컨테이너. 다만, 환적 컨테이너, 연안수송 컨테이너 및 화물을 싣지 아니한 컨테이너는 제외한다.

⑤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⑥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전기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전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나.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다.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8. 정답 ②

• 중과세제외업종(일부)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②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③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④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⑤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

⑥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⑦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창고업

- ⑧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만 해당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 ⑨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업
- ⑩ 개인이 경영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만 해당하며,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 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한다.
- ⑪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에 따른 자원재활용업종

### 9. 정답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 10. 정답 ①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11. 정답 ③

• 특별징수제도가 있는 것

- 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② 담배소비세
- ③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12. 정답 ④

- 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별로 구분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 13. 정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①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 ②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 ③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 ④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 14. 정답 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 ③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 ④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 15. 정답 ④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중과기준세율적용에서 제외한다.

#### 16. 정답 ②

①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단, 다음의 처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제121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 ㉢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③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④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7. 정답 ③**

①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②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③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④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⑤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⑥ 재산세(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⑦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18. 정답 ②**

지방세법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19. 정답 ①**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한다.**

**20. 정답 ②**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